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54
----------	------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5월 27일
발 의 자 :서윤기 의원(1명)
찬 성 자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영희, 김제리, 김태호,
김혜련, 김화숙, 문병훈,
신정호, 이광호, 이병도,
이호대, 임종국, 전석기,
최 선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청년친화위원회 제도,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인재추천위원회 등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청년들이 서울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 심의사항의 구체화 및 조례의 일부 규정을 상위 법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정책위원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용어 정비(안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2항).
- 나.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청년 위원 자격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항제2호).

다. 청년친화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3조7호 및 제10조제3항).

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의 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0조의2).

마. 청년인재추천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0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년친화위원회”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친화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제9조제5항제2호 중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을 “청년단체 등에서 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할 청년들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데이터베이스 담당 부서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에서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의3(청년인재추천위원회)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추천할 청년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인재추천위원회(이하 “청년인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인재추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1. 청년정책 혹은 인재추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위원회 운영 등의 경험과 민관 거버넌스 경험을 지닌 사람

3. 청년들의 관심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 1.~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u>“청년친화위원회”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말한다.</u></p>
<p>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략) ② (생략) 1.~3. (생략) 4. 서울특별시 <u>청년정책위원회</u>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생략)</p>	<p>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서울특별시 <u>청년정책조정위원회</u>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현행과 같음)</p>
<p>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u>청년정책위원회</u>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청년정책조정위원회</u>-----.</p>
<p>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1.~3. (생략)</p>	<p>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p>

<신설>

4.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1. (생략)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4. (생략)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신설>

③·④ (생략)

4. 청년친화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청년단체 등에서 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3.~4. (현행과 같음)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울특별시-----

-----.

③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신설>

제10조의2(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할 청년들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데이터베이스 담당 부서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에서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제10조의3(청년인재추천위원회)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추천할 청년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인재추천위원회(이하 “청년인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인재추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1. 청년정책 혹은 인재추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위원회 운영 등의 경험과 민관 거버넌스 경험을 지닌 사람

3. 청년들의 관심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